

생명개념과 생명윤리에 관한 법과
기독교의 입장 비교연구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 I. 서론
- II. 판례를 통하여 본 법의 생명개념
- III. 한국 기독교의 교리에 나타나는 생명 개념
- IV.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의 생명개념에 대한 제안
- V. 결론

〈국문 초록〉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기본권 보장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통치 구조를 형성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먼저 헌법 정신을 판례에 생명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특히 기독교적 가치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글에서 살펴볼 법원의 판례에 나타나는 생명개념은 ‘배아줄기세포’, ‘사형제도’, ‘안락사’,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존엄사와 연명의료 결정’, 그리고 ‘낙태’에 관한 내용들이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확립한 사회신조나 신경은 격렬한 논쟁, 심지어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형성된 신앙의 가치체계이다.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 신론과 인간의 죄론, 그리고 교회 공동체주의와 부활의 교리를 포함한 신조나 신경은 대 사회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복음의 해석을 통하여 세상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생명윤리문제와 같은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가톨릭 외에 대부분의 개신교 교리로 응답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판례와 개신교단의 신조를 통하여 나타난 생명개념을 비교정리한 후, 기독교윤리학적 맥락에서 기독교의 공공영역의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삶의 세계를 구성하며 주관과 객관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 가치를 공적인 영역에서 실현하는 정치적 참여를 요청한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가 ‘생명’에 대한 다양한 가치의 조화와 통합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고 차이를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하여 노력하기를 요구한다.

주제어*

생명권, 사형제도, 안락사, 낙태, 기독교사회신조

I. 서론

인간의 생명현상을 생물학적 관점이나 법적인 관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면 '제거적 환원주의'의 문제가 생긴다. 이는 한 과학지식이나 법의 해석을 절대화하여 다른 개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¹⁾ 이렇게 되면 법이나 과학적 가설은 일종의 정치적 권력과 같이 되어 과학적 실험은 한 이론을 위한 반복적인 실험이 되며, 법 또한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하위 체계로 변질되게 된다.

따라서 과학이나 법은 생명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윤리적인 공시성과 통시성을 가져야 한다. 즉 법이나 과학은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역사적인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중시하는 '공시적인 관점'과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통시적인 입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법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때때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천이 필요하였듯이 생명 이해에 있어서도 '해방생물학(liberation biology)'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생명과 연관된 인간존엄성과 인권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인식론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²⁾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은 기독교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독교적 생명이해도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종교적 가치체계이다. 교리나 신조, 또는 신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생명관은 사회의 규범 속에서 법과 과학의 정신에 영향을 주거나 받기도 하였다. 법과 과학, 그리고 기독교는 기층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생명개념에 있어서 때로 배타적으로 또는 통합적인 개념을 구성하여 왔다. 따라서 헌법을 통하여 명시하는 생명에 대한 개념과 기독교적 생명이 도덕의 규범 속에서 어떻게 상호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사회의 법의 판결을 통하여 본 생명개념과 기독교의 생명개념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생명권이 명문화되어있지 않지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그 근거를 찾거나,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통하여 생명권이 보장된다는 다수설의 입장이 있다. 그동안 법원의 판례

1) Paul M. Churchland, *Matter and Consciousnes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8), 26.

2) Ronald Bailey, *Liberation Biology: The Scientific and Moral Case for the Biotech Revolution* (New York: Prometheus Books, 2005), 12. 로널드 베일리는 생명공학과 같은 공공정책에 억제보다는 다양한 방법론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에 나타나는 생명개념은 ‘배아줄기세포’, ‘사형제도’, ‘안락사’, ‘여호와의 증인 수혈 거부’, ‘존엄사와 연명의료 결정’, 그리고 ‘낙태’에 관한 판사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아울러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위의 판례에 나타나는 생명개념을 정리한 후 현 한국의 기독교 관점에서 생명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살펴보고 생명윤리와 생명법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 글에서 소개하는 기독교의 생명윤리에 관한 입장은 개신교 6개 교단의 헌법과 신조 및 교리, 그리고 가톨릭의 사회교리를 참고하였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의 교리에 나타나는 생명개념은 신앙고백과 사회적 선포의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교단의 생명윤리에 관한 분명한 입장은 사회정책이나 연구보고서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글에서는 각 교단의 교리적 수준에 제한한다. 한편 가톨릭의 사회교리에는 생명윤리에 관한 그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필자가 제시하려는 생명윤리 개념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구성된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신체나 신체를 구성하는 각 단위로 조합으로 이해하는 기능적 관점으로부터 인간 생명의 전 과정의 변화를 이해하는 통시성과 생명의 발달과정의 각 시기를 이해하는 공시성이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생명이나 윤리적 행위를 정치나 경제사회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보다 통전적인 생명개념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셋째, 인간 생명의 특징은 법-종교와의 대화를 통하여 법의 해석에서 전통적인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관점을 넘어서 기독교의 정신과 영혼의 영역을 수용하며 이를 위하여 기독교는 공공의 장을 통한 담론을 구성하여야 한다.

II. 판례를 통하여 본 법의 생명개념

필자가 법의 생명개념에서 살펴보는 판례는 총 6개이며, 그 내용은 각각 ‘배아’, ‘사형제도’, ‘안락사’, ‘존엄사’, ‘여호와의 증인 수혈 거부’, 그리고 ‘낙태’에 대한 사건이다.

첫째, ‘인간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과 이 기간 후 배아의 폐기 의무가 인

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관한 위헌확인”에서, 헌법재판소(헌재)는 현대 의학계의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위헌이 아님을 판시하였다.³⁾ 당시 청구인들은 배아나 태아, 출생한 인간은 생명의 연속성에 있는 동일한 생명체임으로 ‘인공수정 후 체외에 보관 중인 배아’나 ‘인간의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 그리고 ‘태아’와 ‘출생한 인간’은 다 동등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는 수정시이고, 체세포핵이식의 경우는 핵 이식이므로 인간의 배아는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생명권과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⁴⁾

이에 대하여 헌재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배아의 지위는 모체에 착상되는 시기 이후임을 전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인간배아가 ‘잠재적 인간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면서, 원시선이 출현하기 이전의 배아도 생명권의 존중대상인 인간의 잠재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배아를 인간과 동등한 존재 내지 생명권의 주체로서 인격을 가지는 존재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원시선이 생기기 전의 배아는 ‘세포군’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내었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배아는 인간과 완전히 동등한 존재가 아니므로 헌법상의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례는 전원재판부 2005헌마 346, 2010. 5. 27를 참고하였다. <http://law.go.kr/>, 이하 ‘중합법률정보판례’로 한다.

4) 청구인들은 잔여배아의 보존기간을 한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폐기를 규정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제17조 제1호”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제1호), 근이영양증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제2호),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제3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구 생명윤리법의 2008. 2. 29. 개정으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도 생략하여 잔여배아 연구범위를 백지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제한 없이 잔여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다. 한편, 생명윤리법 제22조 등은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체세포복제배아에 대하여 연구·폐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무성생식에 의한 배아복제를 허용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인간개체의 복제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체세포 복제배아 역시 생성된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배아와 달리 봄으로써 청구인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중합법률정보판례.

둘째,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서 다른 생명의 문제를 보면, 그 주된 요지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감정에 기초한 국가의 형사정책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다.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한 사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 여부와 ‘사형 재판 제도’ 위헌에 관한 결정문을 참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⁵⁾

먼저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에서는 청구인은 ‘생명권’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근거로 하여 생명권의 박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중시하며, 재판의 오류 가능성, 그리고 국가의 예방범죄에 대한 책임과 범죄인을 위한 복지차원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 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제1항, 제466조, 형법 제66조 및 기타 행형법 조항에 근거한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은 공권력의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현행 헌법 제12조,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제338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신체자유의 제한이나 기본권의 법률유보라고 볼 수 없으며,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형사정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응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일명 ‘보라매 병원사건’으로 알려진 ‘안락사’ 문제는 의사의 충고에 의한 퇴원으로 기인한 연명치료중단(산소호흡장치 제거조치)이 살인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본 사안이다.⁶⁾ 당시 양형의 요지를 살펴보면, 치료방법의 선택이나 치료행위의 계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의료인 개인의 양심적인 판단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를 감안하여 의료인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적으로 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이 법의 중에 최고의 가치이며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생명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에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치료중지 요구가 있을 때, 의사의 양심적 결단이 제한적으로 필요하지만,

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종합법률정보판례.

6) “살인(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종합법률정보판례.

“치료행위의 중지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환자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가 신중하게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고려에 의한 치료행위 중지는 살인죄이지만 이 결과를 의사가 의욕 또는 용인할 의사가 없어서 살인방조죄로 법원은 판단하였다.

넷째, ‘존엄사와 연명의료 결정권’에 따른 생명권을 살펴보면, 의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의식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생명과 연관된 환자의 생체기능이 더 이상 복구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판결 또한 생명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회복불가능이란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인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판명되었을 때 환자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연명의료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⁷⁾

이러한 연명치료의 중지는 환자가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 전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나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사전의료지시), 이를 자기 결정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환자가 사전의료지시가 없이 사망의 단계에 이르러 연명치료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평소 환자의 가치관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추정하여(환자의 의사추정) 의료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의료인은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생명유지장치가 삽입 또는 장착되어있는 경우, 환자의 요구에 의한 치료중단은 ‘자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치료의 중단 경우에 법원은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권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⁸⁾ 이에 따른 자기운명결정권의 경우,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치료에 대한 결정권이 우선시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치료행위의 중단에 따른 환자의 사망이 불가피할 경우, 의사는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인 생존과 존재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는

7)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존엄사 사건),”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법률정보판례.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종합법률정보판례.

것이 원칙이지만,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연장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 유지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 될 때 인공호흡기의 제거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생명의 회복가능성에 판단 기준은 병원과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식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규범에 따르게 되어있다. 참고로 의학문헌에 의하면, 식물상태가 3개월 내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0% 내지 8%이다. ‘서울서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의 경우, 인공호흡기의 도움이 없이는 호흡이 불가능하고, 대뇌의 인지기능의 상실로 의사소통의 불가능, 그리고 그 외 신체의 반응소견이 뇌사상태는 아니지만, 식물인간상태보다 더 심각한 경우로 법원은 판단하여 연명치료장치제거를 판결 하였다.

다섯째,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의사의 진료행위 기준을 알 수 있다.⁹⁾ 여기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관한 부분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당시 망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피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확고하였으며, 수술 전에 그 어떤 상황에도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타가수혈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증인 교섭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지만, 답신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무수혈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집도한 의사에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다는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가 더 중시되어야 하지만, 수혈거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진료의무의 범리와 상충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수혈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망인의 의사결정에 더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낙태의 권리와 생명권’을 살펴보면, 현행 형법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할 때, 분만의 개시로 보는 진통설과 분만 개시설에 근거하고 있다.¹⁰⁾ 한편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분만개시의 시점이 임산부나 의사의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사람의 시기는 불명확하게 되어 태아가

9) “업무상 과실치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종합법률정보판례.

10) “낙태교사,”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949 판결 등 참조.

사망에 이르게 되어도 업무상과실치사로 보지 않았다.¹¹⁾

낙태죄는 자연분만기 전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적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할 때 성립된다. 낙태의 경우 우선 태아가 사망하였을 때 임신부의 상해와 연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보면 현행 형법은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인정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죄를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임신한 부녀의 자기 낙태나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위, 낙태로 기인한 부녀의 사망과 상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임신부에 대한 상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¹²⁾ 그 이유는 태아의 사망으로 임신부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낙태시술을 통하여 태아가 미숙아로 출생하였을 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사하여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미숙아 살해가 인정된다.¹³⁾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통한 법의 생명권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모체와 연관하여 태아가 착상되었을 때 생명의 시작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록 모태에 착상되기 전의 배아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은 있지만, 수정된 후 14일이 지나야 생명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배아에 원시선이 나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원시선 윤곽은 뇌와 척수의 분리를 알리는 원시신경관을 말한다. 한편,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형법은 진통에서, 그리고 민법은 완전노출설이 인권의 기준이 된다.

둘째, 인간의 생명이 정지되었다는 것은 환자의 의식이 회복 불가능하며 생명과 연관된 생체기능이 복구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름을 의미한다. 이를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 나타난 사형이나 안락사, 낙태, 그리고 연명치료와 연관된 쟁점에서의 생명개념은 국가의 공권이나 의학적 결정론, 또는 의료행위의 경제적 요인등과 연관이 되어 그 생명의 존엄성이 개인의 인권 보다는 공익의 차원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생명의 주체로서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근

11) “업무상 과실치사,” 이 내용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6570’로 판결되었고, 원심판결은 서울중앙지법 2005. 5. 12. 선고 2004노1677 판결로 이루어졌다. 종합법률정보판례.

12) “업무상 과실치상,”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종합법률정보판례.

13) “살인·업무상 촉탁낙태·의료법위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종합법률정보판례.

거한 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인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형사상의 제한을 받는다. 자살과 같은 경우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예방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자살의 주요 원인인 되는 경제적 빈곤에 따른 사회적 절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¹⁴⁾

위의 판례에 나타나는 법적인 생명개념은 생명을 아직도 ‘육체의 현상’에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자와 난자의 수정체나 배아, 그리고 태아, 낙태, 자연사, 자살과 같은 기능적 유형으로 생명의 개념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서 생명의 기원을 신의 뜻에 두는 종교적 관점은 소수설에 간간히 등장한다.

셋째,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명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생명을 제공했다고 하는 창조 신앙을 전제한다.¹⁵⁾ 물론 오늘날 특별히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공학 및 의료과학의 발달로 인해 기독교의 생명 윤리적 원리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아졌으며, 이는 기독교 문화가 더 이상 인간의 사회적 측면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을 반영한다. 생명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간학문적 대화는 성서와 전통에 근거하여 더 적극적으로 생명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필자는 위에서 살펴본 판례의 생명개념과 관련하여 기독교의 교리에 나타나는 신학적 관점에서 그 입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은 기독교의 생명 개념이 한국의 기독교 교리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하여 보는 것이다. 기독교의 생명 개념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두며,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생명의 연원을 하나님에게 둔다. 따라서 생명과 연관된 인권 또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형성되는 천부적인 권리이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판례에 나타나는 다양한 생명 개념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개념이나 교리는 그 입지가 매우 작아 보인다. 이제 필자가 살펴보려는 한국 내 기독교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감리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그리

14)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정책은 마련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11. 3. 30 [법률 제10516호, 시행 2012. 3. 31.] 보건복지부, 종합법률정보판례.

15) James F. Childress, “Christian Ethics, Medicine and Genetic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ed. Robin Gi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87.

고 가톨릭 등 총 7개 교단의 입장이다. 이제 각 교단의 신조나 교리에 나타나는 생명의 개념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Ⅲ. 한국 기독교의 교리에 나타나는 생명 개념

현재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관점과 대안에 대하여 표명하고 있는 교단은 가톨릭이다.¹⁶⁾ 가톨릭은 '사회교리'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다른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은 교단 헌법이나 신조, 또는 교리의 내용에 생명과 연관된 사회·정치·과학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일부 교단은 인권의 맥락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생명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사회신조나 신경은 격렬한 논쟁, 심지어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형성된 신앙의 가치체계이다.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 신론과 인간의 죄론, 그리고 교회 공동체주의와 부활의 교리를 포함한 신조나 신경은 대 사회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변혁의 영성을 제공하면서 복음의 해석을 통하여 세상에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생명 윤리문제와 같은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가톨릭 외에 대부분의 개신교 교리로 응답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현대 개신교의 교리가 전체적으로 종교의 양심을 형성하는 내심의 자유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리나 신경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연관하여 성경의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⁷⁾ 이제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의 교리나 사회원리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신학적인 고백들로 구성되어있다. 각 교단의 총회나 연회에서 결정한 각 원리

16) 필자는 제목에서 '기독교의 교리'라 표기하였는데, 이는 교리, 신경, 사회원리, 사회신경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교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17) Jaslov Pelican, "The Need for Creeds," *Speaking of Faith*, American Public Media, <http://speakingoffaith.publicradio.org/programs/pelikan/index.shtml> [2012. 6. 20 접속].

들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기독교인들의 헌신을 요구하며 신앙과 실천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 교리의 내용 중에서 제한적으로 생명개념과 연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총회헌법’은 제1편 교리의 2부 신조와 3부 요리문답, 4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5부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생명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¹⁸⁾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하신 언약이다(교리편: 문 12).¹⁹⁾ 생명의 은총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을 통하여 그 뜻이 드러나는데,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언약과 연관이 된다(문 63, 출 20:12). 아울러 여섯 번째 계명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는 일을 중지하여야 한다(문 68-69, 왕상 21:9-10; 행 1:8; 엡 5:29; 마 5:21).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만 한다(문 85, 요 3:16-18; 막 1:15; 눅 13:34; 마 28:20). 이 생명의 회개는 인간이 죄를 올바르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켜 오로지 주님만을 복종하는 것이다(문 87, 딤후 2:15; 행 2:37; 11:18, 26:18; 눅 18:13; 렘 14:7; 삼상 7:2).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통하여 본 생명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서(제2장: 2, 요 5:26)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써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목적과 자기의 뜻에 의한 비밀의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²⁰⁾ 또한 이 약속은 아담을 통하여 생명이 약속 되었으며 아담의 후손에게도 유효하다(제7장: 2, 창 2:17; 갈 3:10; 롬 5:12-20, 10:5).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 스스로는 계약에 의하여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은 둘째 계약을 통하여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다(제7장: 3, 갈 3:21;

18)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리편,” <http://www.pck.or.kr/> [2014. 12. 20 접속]. 이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리편”을 참조하였다.

19)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이를 순종하지 않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따른다(창 2:16-17; 롬 5:12-14, 10:5; 눅 10:25-28).

20) 참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3장 5,” (엡 1:4, 9, 11; 롬 8:30; 딤후 1:9; 살전 5:9; 롬 9:11, 13, 16; 엡 1:4, 6, 9, 12 참조)

롬 3:20-21, 8:3; 창 3:15; 사 42:6; 막 16:15-16; 요 3:16; 롬 10:6, 9; 갈 3:11). 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며 은총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며(제10장: 1, 살후 2:13-14; 고후 3:3, 6; 롬 8:30, 11:7; 엡 1:10-11), 인간에게 영적 구속을 계몽하신다(행 26:18; 고전 2:10, 12; 엡 1:17-18). 생명을 통한 구속의 기쁨은 회개를 통하여 시작되며(제15장: 1, 속 12:10; 행 11:18),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셨고 아담에게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제19장: 1, 창 1:26-27, 2:17; 롬 2:14-15, 10:5, 5:12, 19; 갈 3:10, 12; 전 7:29; 욥 28:28). 아울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과 교회의 세례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새 생명으로 봉헌하게 된다(제28장: 1, 롬 4:11; 골 2:11-12).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부여자로서 모든 선한 생각과 순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제34장: 2). 한편,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권은 절대 권리이다(제23장: 4, 살후 2:4; 계13:15-17).

한편 ‘신앙고백서’에는 복음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사명이 있음을 천명하며(제5부: 03:6, 고후 5:18, 제5부: 09:3), 생명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최후의 소망이 된다(제5부: 06:4). 그리고 21세기 신앙고백서에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헌법’의 ‘대요리문답’에는 생명에 관하여 성경의 창조관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적, 이성적, 불사의 영혼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²¹⁾

인간은 본성에 따라서 진정한 생명을 구할 수 없으며,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하여만 생명에 이를 수 있다(대요리문답60). 온전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범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대요리문답76).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도덕법을 선포하셨으며, 인간은 영혼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의무를 순종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신다(신 5:1-3, 31, 33; 눅 10:26-27; 갈

2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헌법/대요리문답: 17,” (창 1:27; 2:7; 2:22; 2:7; 욥 35:11; 전 12:7; 마 10:28; 눅 23:43; 창 1:27; 골 3:10; 엡 4:24; 롬 2:14-15; 전 7:29; 창 1:28; 3:6 참조) <http://www.gapck.org/> [2014. 12. 20 접속].

3:10; 살전 5:23; 눅 1:75; 행 24:16; 롬 10:5; 갈 3:10, 12). 아울러 이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필요하며,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인도한다. 따라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핑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딤후 1:9-10; 갈 3:24; 롬 1:20; 2:15; 갈 3:10).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교리’에는 생명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없지만, 성경을 절대적인 계시로 삼으며 신앙과 생활에 대한 영원한 근본법칙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²²⁾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지만(창 1:16-17), 인간은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타락하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될 수 있다.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와 중생,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하며, 구원의 내적 증거로는 성령의 인치심이고, 외적 증거로는 진리를 통한 성결한 생활(롬 8:16)이 요청된다. 한편, 성별된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으며, 침례는 예수를 주로 모셔 들이는 거룩한 의식이 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된다(마 28:19; 히 10:22; 행 10:47; 20:21; 롬 6:4).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사중복음’과 ‘교리’와 ‘신조’를 통하여 생명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²³⁾ 사중복음은 중생과 성결, 그리고 신유와 재림에 관한 것으로서, 중생은 영적인 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질 때 드러나는 신비이며,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복음이다.”²⁴⁾

헌법 제2장의 교리에서 인간은 원죄, 즉 아담의 범죄로 유전된 부패성을 드러내는 육의 속성(롬 7:14-21; 8:6-8)을 드러낸다고 정의되고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의 체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통하여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롬 3:23; 요 3:16; 딤후 2:14; 약 4:8; 딤후 2:12 하; 눅 22:31, 32; 마 24:13; 히 3:14; 벧후 1:10; 딤후 1:14; 빌 2:12).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신경’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²⁵⁾ 사회신경은 총 11조로 되어 있

22)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교리,” <http://www.kihasung.org> [2014. 12. 20 접속].

2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http://www.kehc.org/> [2014. 12. 20 접속].

24)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중복음,” <http://www.kehc.org/> [2014. 12. 20 접속].

25)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신경,” <http://kmcweb.or.kr/> [2014. 12. 20 접속].

으며, 생명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지만 우주 만물에 대한 보존과 생태계에 대한 다스림의 책임,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강조,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생명공학과 같은 급속한 과학의 발전이 창조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음을 중시하여 의료윤리의 확립이 시급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헌법과 규칙집을 통하여 신조와 신앙고백서, 그리고 신앙요리문답을 구성하여 종교적 가치와 신앙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²⁶⁾ 특히 장로교 12개 신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이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보존하시고 주장하십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한 영생과 세례와 성찬을 통한 갱생을 확인하고 교회 공동체의 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은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를 통하여 3부 12장, 583조항에 걸쳐 사회원리를 소개하고 있다.²⁷⁾ 가톨릭은 생태중심적인 사상과 정책은 찬성하지만 생명체들 사이의 가치론적 차이는 유지하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²⁸⁾ 아울러 과학기술의 근본 목적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며, 생물학적 연구에 있어서 각 사물의 본성과 질서를 고려하지 않는 유전자 조작과 같은 생물학적 혼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²⁹⁾

가톨릭 사회교리의 특징은 인간의 생명을 공동체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점이다. 특히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인간화의 첫 자리’가 가정이며,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³⁰⁾ 가정은 인간 존엄성의 장소로서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 새 인간을 선물로 받는다. 생태계를 위한 제일의 기본구조인 가정은 진리와 선에 대한 최초의 결정적 개념을 제공한다.³¹⁾ 따라서 가정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태아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에 대

26)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헌법/신조,” <http://www.prok.org/> [2014. 12. 20 접속].

27) 한국 천주교에서 번역하여 출판한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하여 가톨릭에서 출판한 문서 형식의 사회 교리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간추린 사회교리』(2005), 이하 ‘가톨릭 사회교리’라 함.

28) 가톨릭 사회교리, 462, 463항.

29) 가톨릭 사회교리, 457, 459항.

30) 가톨릭 사회교리, 209항.

31) 가톨릭 사회교리, 212항.

한 가정의 기본적인 권리 충족이 요구되는 것이다.³²⁾

성의 존엄과 동등한 가치는 생명과 연관이 된다. 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재와 본질을 드러낸다.³³⁾ 임신으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가정은 생명문화의 중심에서 파괴적인 반문화에 대한 대항주체로 자리매김을 한다. 특히 낙태나 불임시술에 대하여 반대하며, 인간과 민족들의 참된 발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피임을 반대하며 금욕을 권장한다.³⁴⁾ 다른 여성의 자궁이나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의 생식체를 이용하여 출산을 시도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할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자나 난자의 기증, 대리모, 비배우자 사이의 인공 수정과 같은 생식 기술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가톨릭은 반대한다.

또한 배우자의 성적 결합 행위와 출산 행위를 분리시키는 인공수정이나 출산 보조기법과 같은 방법들도 반대한다.³⁵⁾ 한편, 연명치료와 같은 경우 생명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유한한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죽음까지 포함하는 생명권과 인권을 더 중시한다.³⁶⁾ 아울러 생명권과 반하여 의도된 낙태와 안락사는 또한 불법으로 여긴다.³⁷⁾ 이와 같은 생명에 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의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대하여 가톨릭은 자연법에 근거한 인간 이성의 역할에 긍정하며, 생명공학이 공동의 선을 지향하고, 생명공학자들이 다루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중시하며 생명공학기업의 연구와 입법자들의 윤리관을 강조하고 있다.³⁸⁾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내 기독교의 주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관한 내용을 법의 판례와 비교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명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나 신조는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절대 권위를 부여하여 인간의 생명은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회복된다. 법의 판례는 인간의 생명을 인권의 차원에서 해석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그리고 부

32) 가톨릭 사회교리, 252항.

33) 가톨릭 사회교리, 109항.

34) 가톨릭 사회교리, 233항, 234항.

35) 가톨릭 사회교리, 235항.

36) 가톨릭 사회교리, 154항.

37) 가톨릭 사회교리, 155항.

38) 가톨릭 사회교리, 473-479항.

활로 이어지는 영생의 맥락에서 생명개념을 파악하며 죽음 또한 개인존재의 종말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며, 영생과 연관되는 전환점이다. 가톨릭의 경우는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존재론적 또는 가치론적인 차이를 없애려는 자연절대주의에 반대하면서 특히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고백의 신앙적 양심에 머무르고 있는 개신교의 윤리보다 더 구체적이다.

둘째, 생명윤리와 관련된 쟁점에서 법은 생명을 배아나 태아와 모체와의 관계에서 파악하거나(배아의 생명권) 국민들의 도덕 감정에 기초한 법익형량의 공익적 개념(사형제)을 더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라매 사건)을 중시하며, 환자 스스로가 행복권(연명치료중지)의 수행을 위하여 생명을 중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생명의 자기 결정권(여호와증인 수혈거부)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 낙태와 연관된 임신부의 상해여부에 있어서 모태결정권(낙태)을 더 중요하게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시가 암시하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 주체로서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 교리에는 가톨릭이 구체적으로 생명윤리를 자연법의 전통에서 확립하고 교리와 하였으며 다른 개신교 교단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원죄의 교리와 연관되며, 타락으로 기인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왜곡과도 관계가 있다. 참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경우 하나님이 부여하신 도덕법의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도 개인의 인권과 생명윤리의 확립을 강조하지만, 생명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 한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중생의 외적 증거로서 성결한 생활을 주장하지만, 생명과 연관된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다.

IV.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의 생명개념에 대한 제안

지금까지 필자는 법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생명개념과 기독교의 생명개념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의 생명개념은 신앙의 척도가 실제 사회생활의 규범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연관된 구체적인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 적용이 가톨릭 외에는 개신교는 매우 모호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가 법의 생명개념과

기독교의 생명개념을 통하여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것은 각각 ‘법과 기독교 사이의 생명개념의 보충적 협력’과 개신교윤리의 ‘공공화(公共化)’이다.

첫째, 법과 기독교사이의 보충적 협력에 관하여 필자는 양자의 소통을 강조하고 싶다. 법과 기독교사이의 생명개념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생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권과 인권을 둘러싼 법의이익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호와와의 증인 수혈거부’와 연관된 종교적 양심의 문제는 당시 ‘여호와와의 증인 교섭위원회’를 통한 종교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지만, 어떤 사유인지 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생명권과 연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개인의 결정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은 실정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적 자유는 주관적인 공권이며 절대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이 종교적 자유는 양심의 자유로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데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판사에서 양심의 자유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와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보았다.³⁹⁾ 전자는 양심형성과 결정과정에서 자유를 전제하지만, 후자는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자유이다. 따라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중시하는 현재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제한된다고 보았다.⁴⁰⁾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 교리를 통한 생명권에 있어서 종교적 양심의 경우를 적용한 재량권을 인정하여도 현 실정법의 저촉을 받으며, 법익 교량을 통한 양심의 자유와 공익 양자의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종교적 신념체계와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시민의 전 생활을 인도하는 가치규범이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신앙적 가치규범과 유리하여 해석될 수 없다. 종교적 가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인권을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공권의 특성도 있으

3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정,” 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등, 공보 제179호, 1205 [합헌], <http://www.ccourt.go.kr/> [2014. 12. 20 접속].

40)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제13권 2집, 353. 이 사안은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에 관한 판례이다. <http://www.ccourt.go.kr/> [2014. 12. 20 접속].

며, 기본권의 제정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심의 자유라는 주관적 의미의 기본권을 형성하면서 정교의 분리를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서도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는 지난 수천 년 간 정교한 교리와 신앙체계를 형성하여 왔지만, 급변하는 현대의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에 대하여서 응답하기에는 교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는 생명과 연관된 전통적인 해석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당연히 개신교 윤리의 '공공'개념이 강화되어야 하는 생명과 연관이 된다.

둘째, '개신교윤리의 공공화'는 생명과 같은 기본권의 경우 종교적 가치체계와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통한 질서를 모색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사회문제와 연관하여 개신교 윤리는 자칫 양심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⁴¹⁾ 특히 개신교 윤리에 대한 비판 중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는 윤리의 문제가 책임적인 행동의 지평 보다는 개인 구원의 차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이에 응답하는 인간 이성 사이의 긴장관계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특성을 가진다. 가톨릭의 경우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는 공동선은 자연법의 질서에서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특성을 가진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자연법은 실천적 판단범주로서 양심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복의 원리를 구성한다. 가톨릭은 '가톨릭의 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조된 사물 속에 신적 이성을 찾는 지혜를 역사 속에서 구현하여 왔다.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알 수 있지만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도덕신학의 전문가 견해를 필요로 하게 되며, 결의론적 방법론을 통하여 교도권이 형성되었고 현대에도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개신교의 경우 민주나 자유, 생명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해답은 자연법적 이성의 원리보다는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는다. 도덕적 삶의 근본 원리는 오로지 말씀과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한 중생과 순결한 신앙의 양심을 강조하지만, 그 양심이 다양한 현실적 조건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작동할지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개신교 윤리의 경우 현실적인 법 조건과 각 윤리적 사안과 연관한 보다 세밀하고 깊이 있는 말씀의 해석이 요구된다.

41) H. Richard Niebuhr,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노치준 역, 『교회분열의 사회적 배경』(서울: 종로서적, 1983), 4-5, 261.

만일 개신교의 윤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이 개인의 내심의 자유 영역에서의 판단기준에 그친다면, 양심 실현의 경우 다양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해답은 양심이 처한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그 기준점들이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개신교 윤리는 종교적 내심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장이 협력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을 확장하며 신학과 신앙,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함께 공론이 될 수 있는 영역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 연관되어야 할 자유와 평등 개념의 발전, 그리고 인권에 대한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공공성에 참여하려면, 시민의 존엄성과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공공의 권위는 공공의 봉사를 통하여 그 권위가 확보될 것이며, 정책을 입안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소통의 연대가 다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생명과 연관된 공공보전에 대한 각성과 계몽을 선도하여 공적 규범과 도덕을 신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 교회와 국가가 헌법의 틀 안에서 함께 생명에 관한 공공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교단별 사회신경과 신조 그리고 교리에 구체적인 생명윤리에 관한 신앙관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병원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각 교단 별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기독교적 생명윤리가 실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국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자문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원 14인과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현재 4기째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과대학 교수와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독교적 관점이 얼마나 배려가 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범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생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의 담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V. 결 론

필자는 지금까지 법의 판례에 나타나는 생명개념과 한국의 기독교 교리에 나타나는 생명개념을 살펴보았다. 가톨릭의 경우 나름대로 자연법을 통한 교도권을

활용하여 생명윤리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답하고 있지만 개신교의 경우는 성경에 근거한 인권이나 생명권의 원론만 강조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과 종교개념의 보충적 협력과 기독교 가치를 공공화 해야 할 책임이 요청된다.

현대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생명공학이 생명을 중시하는 그 도덕적 규범을 상실하면, 인간생명을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주의적 가치로 치부하고, 의학적 관점에서 생명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볼 여지가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생명공학은 자칫 인간의 생명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과감하게 도구화함으로써 5년이 넘는 배아를 폐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소비할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성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독교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신앙의 수준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체 안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정책과 법의 변화를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공적기구를 통한 생명윤리의 강화와 소통의 담론을 형성하고 기독교 윤리학자와 생명정책 입안자, 그리고 기독교 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권이 지켜지는 공공담론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판례에 나타나는 생명에 대한 해석을 보면,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누어지며 다양한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가능한 고려하려는 법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생명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가치를 법에 적용하는 것은 사회를 통합하여야 할 법적 안전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생명에 관한 법적 이해와 기독교적 관점의 차이를 법의 규범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권은 역사의 정치 문화적 상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삶의 세계를 구성하는 기독교의 가치를 신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사명이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하는 기독교인의 가치를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과 법의 정신을 통하여 구현함으로써 기독교가 법의 안정과 사회적 가치의 통합에 기여하며,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생명문화를 형성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참고문헌

- Act 법률. “Jasalyebang mit saengmyungjonjungmunhwa zosungeul wehan bupyul”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Act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 제정 2011. 3. 30 [Legislation March 30, 2011]. *Jonghapbeomryuljeongbopanrye* 종합법률정보판례 [General Information on Judicial Precedents]. <http://law.go.kr/> [accessed November 21, 2014].
- Bailey, Ronald. *Liberation Biology: the Scientific and Moral Case for the Biotech Revolution*. New York: Prometheus Books, 2005.
-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Ganchurin sahoegyori* 『간추린 사회교리』 [Summary of Social Principles].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05.
- Childress, James F. “Christian Ethics, Medicine and Genetic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edited by Robin Gill, 2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Churchland, Paul M. *Matter and Consciousnes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8.
-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기독교대한성결교회. “Sajungbokeum” 사중복음 [Four-fold Gospel]. <http://www.kehc.org/> [accessed December 20, 2014].
- Niebuhr, H. Richard.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Translated by No Chi-Jun. *Gyohobunyuleui sahoejeok backyung* 『교회분열의 사회적 배경』. Seoul: Jongro Books, 1983.
- Pelican, Jaslov. “The Need for Creeds.” *Speaking of Faith*. American Public Media. <http://speakingoffaith.publicradio.org/programs/pelikan/index.shtml> [accessed June 20, 2012].
- The Assembly of God of Korea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Gyori” 교리 [Doctrines]. <http://www.kihasung.org> [accessed December 20, 2014].
- The Constitutional Court 전원재판부. “Saengmyungyunri mit anjunae gwanhan bupryul je sipsamjo jeilhang deung wehunhwakin”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등 위헌확인 [Unconstitutionality Suit against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13, 1]. 2005헌마346. 2010. 5. 27 [2005heonma346. May 27, 2010]. *Jonghapbeomryuljeongbopanrye* 종합법률정보판례 [General Information on Judicial Precedents].

<http://law.go.kr/> [accessed November 21, 2014].

- _____. “Hyungbup jesasipiljo deung wehunhwapin” 형법 제 41조 등 위헌제청 [Unconstitutionality Suit against Criminal Act Article 41]. 2008헌가23. 2010. 2. 25 [2008heonga23. February 25, 2010]. *Jonghapbeomryuljeongbopanrye* 종합법률정보판례 [General Information on Judicial Precedents]. <http://law.go.kr/> [accessed November 21, 2014].
-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Chungghoehunbup/daeyourimundap” 헌법/대요리문답 [Constitution/Larger Catechism]. <http://www.gapck.org/> [accessed December 20, 2014].
- The Korean Methodist Church 기독교대한감리회. “Sahoesyung” 사회신경 [Social Creed]. <http://kmcweb.or.kr/> [accessed December 20, 2014].
-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Humbup/sinjo” 헌법/신조 [Constitution/Creed]. <http://www.prok.org/> [accessed December 20, 2014].
-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 “Gyoripyun” 교리편 [Doctrines]. <http://www.pck.or.kr/> [accessed December 20, 2014].
- The Supreme Court 대법원. “Salin(Injungdoen joemyung: Salinbingjo)” 살인(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Murder, Assisted Murder].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Verdict 2002do995 Decision. June 24, 2004]. *Jonghapbeomryuljeongbopanrye* 종합법률정보판례 [General Information on Judicial Precedents]. <http://law.go.kr/> [accessed November 21, 2014].
- _____. “Mueuimihan yunmyungchiryo jangchi jegue deung(jonumsa)”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존엄사 사건) [Suspend Life Sustaining Treatment Devices(Euthanasia with Dignity)].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Verdict 2009da17417 Decision. May 21, 2009]. *Jonghapbeomryuljeongbopanrye* 종합법률정보판례 [General Information on Judicial Precedents]. <http://law.go.kr/> [accessed November 21, 2014].
- _____. “Eupmusanggwasilchisa” 업무상과실치사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Verdict 2009do14407 Decision. June 26, 2014]. *Jonghapbeomryuljeongbopanrye* 종합법률정보판례 [General Information on Judicial Precedents]. <http://law.go.kr/> [accessed November 21, 2014].
- _____. “Naktaegyosa” 낙태교사 [Abortion Instigator]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Verdict 81do2621 Decision, October 12, 1982]. 대법원 1998. 10. 9 [Supreme Court October 9, 1998] 선고 98도949 판결 [Verdict 98do949 Decision]. *Jonghapbeomryuljeongbopanrye* 종합법률정보판례 [General Information on Judicial

Precedents]. <http://law.go.kr/> [accessed November 21, 2014].

_____. “Eupmusangwasilchisa” 업무상과실치사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2004. 3. 26. 선고 2003도6570 판결 [Verdict 2003do6570 Decision. March 26, 2004]. *Jonghapbeomryuljeongbopanrye* 종합법률정보판례 [General Information on Judicial Precedents]. <http://law.go.kr/> [accessed November 21, 2014].

_____. “Eupmusangwasilchisang” 업무상과실치상 [Bodily Injury Due to Occupational Negligence of Crimes].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Verdict 2005do3832 Decision. June 29, 2007]. *Jonghapbeomryuljeongbopanrye* 종합법률정보판례 [General Information on Judicial Precedents]. <http://law.go.kr/> [accessed November 21, 2014].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dea of Life and Christian Ethics within the Law and Christian Social Principles

YOO Kyoung-D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and Societ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South Korea

The ideology in the Constitution recognizes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life in particular must not be limited under any circumstances. However the perspectives of the right to life in the precedents and cas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Court, and many trials by lower courts differ from those of the Christian social principles of the right to life which hold the truth that the Creator endows life and the pursuit happiness.

In the discussion of the comparison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the social principles and doctrines of the Korean mainline Protestant churches, such issues surrounding the right to life as embryo, euthanasia, blood transfusion, death with dignity,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illegal abortion are engaged to explore the meaning of life and freedom of religious conscience.

After reviewing all the factors of the above issues brief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Korean Christianity need to make diligent effort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Christian principles in the idea of life.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and Christian communities are encouraged to promote the public talks and revise the standard of the right to life, and reestablish supervision on life ethics.

Key Words *

The Right to Life, Death Penalty, Euthanasia, Abortion, Christian Social Principles

• 투고(접수)일 : 2014. 12. 30 • 심사(수정)일 : 2015. 1. 27 • 게재확정일 : 2015. 2. 5